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신복자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영세 상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인 보행로를 통해 영업이 이뤄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인접 건물이 건축공사 허가를 받고도 이전을

거부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로 인해 건축공사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공사기간 동안 좁아진 통행로로 인해 안전 상의 문제가 초래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허가 및 관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 지연 및 통행불편,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도상영업시설물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의 경우 시장이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해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